

[별표 4] (제5조제1항제4호 관련)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I.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20	1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10
	3.기술능력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9	9
		나. 기술 보유상황	1	1
	4.신인도		+4.25~ -5.0	+4.25~ -5.0
계			40	30
II.입찰가격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III.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파산·해산·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인력 보유기준 포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	-20

①입찰가격 계산식

사업예산규모	계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 평점(점) = 배점한도 - 2 × ($\frac{90}{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 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7.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 평점(점) = 배점한도 - 4 × ($\frac{90}{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 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7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3.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해당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 실적비율[금액 또는 수량 기준]	가. 동등이상 용역	A. 100%이상	20	10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분야이거나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 실적
		B. 70%이상~100%미만	18	9	
		C. 40%이상~70%미만	16	8	
		D. 10%이상~40%미만	14	7	
		E. 10%미만	0	0	
	나. 유사용역	A. 100%이상	6	3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1개 이상의 분야가 미포함된 용역이행실적
		B. 70%이상~100%미만	4	2	
		C. 40%이상~70%미만	2	1	
		D. 10%이상~40%미만	1	0.5	
		E. 10%미만	0	0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을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 항목과 “나” 항목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A.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9	9
	B.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0	0
나. 기술보유 상황	A. 신기술(NET)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의한 환경신기술,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설신기술, 「산업기술 혁신촉진법」에 의하여 지정·인정된 신기술. B. 품질인증(GR)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1	1

① 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대표자 포함)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대상인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②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기술 등으로서 적격심사대상자가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또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폐기물을 처리(재활용)하는데 직접 관련된 기술인 경우(GR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해당 폐기물을 활용하여 재활용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인정하되 해당 기술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인증일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2건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기술보유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③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신기술 등 지정서·인증서 등 사본과
기술을 대·협약·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와
기술의 적용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정부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허가기관이 발행한 확인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